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2412 판결 [가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2412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401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가소3386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박은새, 서범석, 이동국

피고, 상고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목(담당변호사 김예림)

판결 선고 2024. 11. 28.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나401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영재

대법관김상환

주심대법관오경미

대법관권영준